

증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[2003. 12. 15] 조례 제57호

개정 2005. 6. 28 조례 제 149호
개정 2006. 10. 13 조례 제 208호
개정 2007. 3. 23 조례 제 227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개정 2008. 8. 6 조례 제 293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개정 2008. 10. 10 조례 제 300호
일부개정 2012. 1. 6 조례 제 406호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4. 11. 21 조례 제 553호
(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5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전부개정 2015. 10. 30 조례 제 619호
일부개정 2016. 6. 10 조례 제 677호
일부개정 2018. 12. 28 조례 제 845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20. 8. 7 조례 제 931호
(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
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일부개정 2020. 11. 20 조례 제 946호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7호
(조직개편에 따른 「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전부개정 2025. 10. 31 조례 제1248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용도 등)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4제8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

증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
 3. 그 밖에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.

제3조(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군수는 증평군 금고(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)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· 관리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.

제5조(회계공무원) 군수는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2. 기금출납원: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

부칙(2025. 10. 31 조례 제1248호 전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.

② 종전의 「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의 자산과 채권 · 채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